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9호 다목)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라. 가중 처분을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8 제1호나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7호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를 “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 제7호”로 한다.

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별표 1의5 제8호나목 중 “수행하는 경우”를 “수행한 경우”로, “수행하는 자”를 “수행한 자”로 한다.

별표 3의 표 위반행위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			5,000
7.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	법 제20조의4제			

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항제4호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2,500	5,000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500	5,000
8.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제 1항제5호	1,000	2,500	5,000
가. 영 별표 1의5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0	2,500	
나. 영별표 1의5 제8호를 지키지 않 은 경우		1,000	2,500	
9.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4제 1항제6호		5,000 이내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할 계상)		

별표 8 제1호나목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8 제2호가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2호			
1)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u>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u>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u>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u>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 <u>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u>삭 제</u>	제41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법 제50조제1항에 따른</u> 과징금의 부과·징수	7. <u>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u>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생략) 나. <u>법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u> 다. <u>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u>	9. ----- ----- ----- 가. (현행과 같음) 나. <u>법 제8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u> 다. <u>법 제80조제4항제2호의2·제3호·제3호의2, 제7호</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2